

##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경영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18년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경영공시 합니다.

### I. 경영목표

#### 경 영 목 표

수산식품 브랜드 상용화 및 미래 산업화 추진

#### 추진 과제

수산식품  
연구개발

지역대표  
브랜드개발

수산식품  
산업육성

기업지원  
체계확립

#### 추진 전략

- 목포 대표 수산식품 브랜드 제품의 사업 활성화
- 고부가가치 기능성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
-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및 연구
- 수산식품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수산특산물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식품 기업의 창업 보육 및 인력 양성

## II. 예산 총칙

제1조 (총칙) 2018년도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지원센터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합 계	1,954,105	합 계	1,954,105
사 업 예 산			
소 계	1,954,105	소 계	1,954,105
1. 사업수익	220,000	1. 사업비용	1,934,105
가. 연구용역사업 수익	50,000	가. 인건비	655,093
나. 기술이전 수익	10,000	나. 경 비	1,279,012
다. 시설사용료 수익	120,000	- 4대보험 등	58,558
라. 임대료 수익	40,000	- 여비 및 교육훈련비	61,658
		- 일반운영비	441,396
		- 행사홍보비	18,400
		- 연구개발비	284,000
		- 시설비	370,000
		- 자산취득비	45,000
2. 사업외수익	1,734,105	2. 사업외비용	20,000
가. 자치단체 출연금	1,200,000	가. 예비비	20,000
나. 순세계 잉여금	465,505		
다. 이 자 수 입	10,000		
라. 기 타 수 입	58,600		

제2조 사업수입 220,000천원에 대하여 사업비용 1,934,105천원의 부족액 1,714,105천원은 사업외 수입금(목포시 출연금 및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월금) 으로 충당한다.

제3조 이사장은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정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부채상환 원리금은 전용할 수 없다.

제4조 이사장은 사업에 대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고 그 한도액은 7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공사, 제조, 조달 또는 구매중에 있는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법인사업을 위하여 목포시로부터 법인에 보조하는 금액은 1,200,000천원이다.

제7조 이사장은 예기치 않은 상황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2일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지원센터 이사장

### Ⅲ. 운영계획

(단위 : 천원)

계 획 별	구 분	당 년 도	전 년 도	비 고
1. 임대사업	사무실임대	16기업	15기업	
2. 시설사용, 사업운영 수익	시설사용, 연구용역 수익, 기술이전수익	180,000천원	170,000천원	
3. 출연금	시출연금	1,200,000천원	800,000천원	
4.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465,505천원	653,675천원	
5. 인력관리계획	계	12명	11명	
	센터장	1명	1명	
	행정지원팀	2명	2명	
	연구기획팀	4명	3명	
	생산경영관리팀	5명	5명	육아휴직대체 인력 1명
6. 재정계획	사업수익(계)	288,600천원	233,000천원	
	임대사업	40,000천원	32,800천원	
	시설사용료 수익	120,000천원	120,000천원	
	사업운영수익	60,000천원	50,000천원	
	기타수입	68,600천원	30,200천원	
	사업비용(계)	1,954,105천원	1,666,675천원	
	인 건 비	655,093천원	598,890천원	
	경비	1,279,012천원	1,067,785천원	
	기타비용	-	-	